

DJDI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방안

주혜진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 • 주혜진 /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요약 및 정책제안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발굴과정 및 방법의 체계화 필요성

- 여성가족부의 현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 지침 상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은 인적 자원 대상 사업, 시설설치·개선사업,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업임.
- 상당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이기에 (대전광역시 본청의 경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상 500여 개의 단위사업과 1600여개 세부사업을 검토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에 어려움이 따름.
- 대전광역시와 5개 기초자치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선정 방법 과정 사례의 제안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용에 필요한 대상 정책 사업의 선정 기준 및 추진 절차를 마련하고자함.

□ 연구방법

- 여성가족부 발행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비롯한 문헌연구
- 전문가 조사 3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담당자 및 젠더전문가 회의

□ 1·2차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조사 결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시 제외가 필요한 사업의 속성 상위 5:
 - 집행내역이 물품 관련한 예산만 있는 사업
 - 일회성행사로 공무원의 재량이 거의 없는 사업
 - 차년도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

- 여성의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예산규모가 100만원 미만의 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시 선정이 필요한 사업의 속성 상위 10:**
 - 지역 성평등지수에서 점수가 낮아 성불평등이 큰 부문 또는 지역 성평등 지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
 - 인적대상 사업(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산업 육성, 연구개발사업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또는 여성정책관련위원회)가 제안하는 사업
 - 2012년, 2013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 중 성과목표 미달 사업
 - 시설설치 개선 사업(공원, 도로, 주거 등)
 - 지자체 자체 추진 사업
 - 지역 여성이 참여한 모니터링 주제 반영 사업
 - 기관 중장기 발전 계획에 포함된 사업
 - 계획수립사업(도시발전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 3차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조사(IPA) 결과

- 필요성-영향력-환류가능성 모든 측면에서 분석평가의 높은 적절성을 보인 사업의 속성:
 - 인적 대상 사업
 - 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제안하는 사업
 - 시민 모니터링 주제로 선정된 사업
 - 성평등 지수가 낮은 사업

□ 2014년 대전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가중치 산출(안)

선정 내용		가중치
제외 의 경우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가?	0
	2. 일반수용비만 있는 사업인가?(홍보물, 현수막 등)	-20
	3. 차년도 사업 계획이 없는 사업인가? (일몰이면 o, 아니면 x)	-20
고려 대상 의 경우	1. 인적대상사업인가?(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20
	1-1. 수혜자 선정이 공모에 의해 결정되는가?	10
	1-2. 사업의 주요 수혜자 통계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인가?	15
	2. 시설설치 개선사업인가? (공원, 건축, 주거 환경 개선, 도로 등 o, 단순 개보수 사업일 경우 x)	20
	3. 전액 지방비 사업인가?	10
	4. 국비지원·기금 사업인가?	10
	5. 매년 지속되는 사업인가?	10
	6. 당해연도 신규사업인가?	10
	7. 기관의 중장기 계획사업인가?	10
	8. 단체장의 공약사업인가?	5
	9. 세부사업 기준으로 예산규모가 1억원이상인가?	10
	10. 주요 행사 혹은 축제 중에서 예산규모가 오천만원 이상 사업인가?	10
	11.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였는가?	0
11-1. 성인지예산 결산결과,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가(달성하지 못했다면 o, 달성했다면 x)?	10	
12. 최근 3년 내 민원이 발생한 사업인가?	10	
합계		120

- 목 차 -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방법	5
1. 국내외 관련 문헌 연구	5
2. 전문가 조사	5
3.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담당자 및 컨설턴트 자문회의	6
제2장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	9
제1절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	9
제2절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11
제3장 16개 시·도 및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조사	15
제1절 설문조사지 개발을 위한 사전 조사	15
1. 설문조사지 개발을 위한 사전 전문가 조사 개요	15
2. 사전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17
3.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조사 설문안 도출 결과	24
제2절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1차 조사	27
1.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대상 1차 조사 개요	27
2.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1차 조사 결과 분석	28
3. 정리 및 시사점	35
제3절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2차 조사	37
1.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대상 2차 조사 개요	37
2.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2차 조사 결과 분석	38
3. 정리 및 시사점	50

제4장 지역 젠더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회의 결과 분석	53
제1절 회의 개요	53
제2절 회의 결과 분석	54
1.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 제외의 경우	55
2.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의 경우	56
3.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의 절차	57
제3절 정리 및 시사점	58
제5장 2014년 대전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과정 사례	61
제1절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제도 추진의 흐름	61
제2절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과정	63
제3절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 및 체크리스트	67
제4절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결과	70
제5절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대상 사업 선정의 과제	75
참고문헌	77
부록	
부록 1. 사전 전문가 설문 조사지	81
부록 2. 1차 중앙 및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설문조사지	85
부록 3. 2차 중앙 및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대상과제 선정 전문가 설문조사지	89

- 표 목 차 -

<표 2-1> 여성가족부 지침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	9
<표 3-1>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지 개발을 위한 사전 젠더 전문가조사 개요	16
<표 3-2> 대상 사업 선정 기준 설정에 대한 사전 젠더전문가 조사 결과	17
<표 3-3> 사전 젠더전문가 조사 시 제안된 분석평가 대상 제외의 경우	19
<표 3-4> 대상 사업 제외 기준에 대한 사전 젠더전문가 조사 결과	20
<표 3-5> 사전 젠더전문가 조사 시 제안된 분석평가 대상 선정의 경우	21
<표 3-6> 대상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한 사전 젠더전문가 조사 결과	22
<표 3-7> 1차 지역 전문가 조사를 위한 대상 사업 제외의 경우	25
<표 3-8> 1차 지역 전문가 조사를 위한 대상 사업 선정의 경우	26
<표 3-9>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제외의 경우 사례	28
<표 3-10>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제외의 경우 조사결과	29
<표 3-11>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선정의 경우 사례	32
<표 3-12>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선정의 경우 조사결과	33
<표 3-13> IPA 대상 사업 선정 결과	41
<표 3-14>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기준의 필요성과 영향력 차이	42
<표 3-15>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기준의 필요성과 환류가능성 차이	45
<표 3-16>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기준의 영향력과 환류가능성 차이	48
<표 4-1> 지역 젠더 전문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회의 개요	54
<표 4-2> 대상과제 제외의 경우 논의 결과	55
<표 4-3> 대상과제 선정의 경우 논의 결과	56
<표 4-4> 대상과제 선정절차에 대한 논의 결과	57
<표 5-1> 기관별 단위사업 중 작성 세부사업 선정 방법	72
<표 5-2> 기관별 대상과제 선정 현황	74

- 그림 목 차 -

[그림 3-1] IPA를 활용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의 틀	39
[그림 3-2]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기준의 필요성-영향력 IPA	43
[그림 3-3]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기준의 필요성-환류가능성 IPA	46
[그림 3-4]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기준의 영향력-환류가능성 IPA	49
[그림 5-1]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제도 추진의 흐름	62
[그림 5-2] 2014년 대전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고려사항과 절차	64
[그림 5-3] 2014년 대전지역 체크리스트 활용을 통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의 절차	66
[그림 5-4] 2014년 대전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안)	67
[그림 5-5] 2014년 대전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69
[그림 5-6] 시청 282개 단위사업별 순위 리스트	70
[그림 5-7] 시청 282개 부서별 순위 리스트	71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하기 시작했다. 2006년 기초자치단체, 2007년 시·도 교육청을 대상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2011년 9월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한 본격적 시행은 2012년 3월부터라 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도 2005년 4개 과제를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을 시작으로 2014년 460여개의 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지금에 이르렀다. 2012년 4월에는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개소하여 대상과제의 선정 지원과 평가서 작성 컨설팅 및 결과종합분석 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수행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본청과 5개 기초자치구 그리고 시교육청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근거하여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해 왔다. 우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제5조 제1항)” 한다는 선정의 기준을 밝히고 있다. 2014년 여성가족부가 펴낸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도 사업담당자가 작성하는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대상 사업 선정 기준과 별도로 광범위한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작성(차년도) 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¹⁾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는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평가 대상 사

1) 강조는 연구자.

업의 선정 기준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인적 대상 사업”으로 이는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인적자원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둘째, “시설 설치·개선 사업”으로 이는 공원, 도로, 주거 등 도시 기반 시설을 새로 짓거나 개선하는 사업들을 의미한다. 셋째,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산업육성이라든가 연구개발사업 등 앞서 제시된 두 가지 기준으로 포함되지 않는 사업들을 의미한다(여성가족부, 2014).

대전광역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 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인적 대상 사업” 기준과 “시설 설치·개선 사업” 기준은 막상 선정 기준으로는 광범위했으며,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기준은 사실 모든 단위 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기준 아닌 기준’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모든 단위사업을 두고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인적 대상 사업과 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을 선정했다라도 사업 담당자들의 ‘이 사업을 평가분석해서 성평등한 기대효과를 얻기는 힘들다’라는 반론에 부딪힌다. 게다가 매년 전년도 보다 더 많은 수의 과제를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서가 작성되어야 함이 지침에 명시된 상황에서, 평가 대상으로 적절한 사업을 선정하는 일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담당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 었다.

모든 인적 자원 대상 사업, 모든 시설설치·개선사업,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업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이며, 이 기준만을 가지고 (대전광역시 본청의 경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상 500여개의 단위사업과 1600여개 세부사업을 검토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할 수는 없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정책사업담당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과제 선정의 기준과 방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와 5개 기초자치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선정 방법 과정 사례의 제안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용에 필요한 대상 정책 사업의 선정 기준 및 추진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전문가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 지표를 다양하게 담아내고, 지표는 계량적 선정 점수를 도출하도록 산술식 및 가중치를 적용하며, 개별 세부사업담당자들은 체크리스트 지표에 따라 평가 대상 적합도를 점수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개별 사업이 얼마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에 적합한지 그 계량적 결과를 참고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나 과제선정위원회 등에서 최종 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개발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2014년 상반기에 대전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상 과제를 선정했는지 그 활용내용을 제시하여 차년도 과제선정 과정과 방식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과 도출된 결과는 앞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절차와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연구방법

1. 국내외 관련 문헌 연구

- 여성가족부 발행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 성별영향평가 추진절차 관련 연구보고서

2. 전문가 조사

- 사전 젠더전문가 조사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과 체크리스트 개발에 대한 개방형 의견

수렴

- 중앙 및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지 개발

- 중앙 및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지표 문항 결정 의견 제시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지표 가중치 결정 의견 제시

3.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담당자 및 컨설턴트 자문회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체크리스트 개발 자문회의
 - 전문가 조사 결과에 나타난 선정 지표 검토 및 의견 교환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체크리스트 상 지표 결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체크리스트 상 지표 가중치 결정

제 2 장

2014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

제1절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

제2절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제 2 장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

제1절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요령이 제시되어 있다. 아래 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는 기준에 나타나 있는 평가 대상 사업 선정의 기준이다.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체크리스트에는 사업담당자인 공무원이 개별 사업들이 과연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기에 적절한 사업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아래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표 2-1> 여성가족부 지침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제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지위 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li style="padding-left: 20px;">- 예) 여성농어업인 육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
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대상 사업 <li style="padding-left: 20px;">- 예)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 시설설치·개선 사업 <li style="padding-left: 20px;">- 예) 공원, 도로, 주거 등 •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li style="padding-left: 20px;">- 예)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

※출처: 여성가족부(2014), 『2014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우선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 된다. 이미 여성이 처한 사회적 현실을 감안하여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여성을 정책 수혜의 직접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다수이며, 목적도 여성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든가 열악한 처우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다.

위 지침에 나타난 대상 사업 선정 기준에 따르면 “제외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사실 모든 정책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공무원 임금 및 복지비, 업무추진비, 시설유지비 등)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석 평가 대상으로 고려가 가능하다.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이라는 매우 광범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대상 사업 선정의 기준이 추상적이고 매우 광범위하다는 위험을 덜기 위하여 거버넌스에 의한 과제 선정 가능성을 참고 조항으로 제시했다. 참고 사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하여 센터전문가와 NGO 활동가가 포함된 자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선정을 위하여 거버넌스가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거버넌스 구성원들이 모여 대상 과제를 선정하고자 할 때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나 선정을 위한 참고자료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논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참여한 구성원들-전문가, NGO 활동가, 공무원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입장과 추진 방향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무엇을 이룰 수 있으며,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 분석평가 대상 정책 사업을 선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선정을 위한 계량화되고 체계적인 참고자료가 필요한 이유다.

제2절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현재 여성가족부가 제공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 담당공무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이 집행·추진하는 사업이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해당란에 기재해야 한다. 체크리스트는 앞 절에 제시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이 실제 평가서 작성 전 적용된 서식이라 할 수 있다. 사업 담당자들은 1단계 제외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예’로 체크하며, 이럴 경우 2단계는 작성 없이 종료된다. 즉,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1단계 제외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아니오’로 체크하며, 2단계의 해당 여부를 작성한다. 2단계 세 개의 경우 중 하나에 ‘예’를 기입하고 분석평가서를 본격적으로 작성한다.

사업명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붙임 자료					

단계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1단계	제외 사업	<input type="checkbox"/>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단계	대상 사업	<input type="checkbox"/> 인적 대상 사업 예)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시설설치·개선 사업 예) 공원, 도로, 주거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예)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체크리스트에 따라 대상과제 선정 여부를 점검하면, 1단계인 “제외의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거의 모든 사업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게 된다. 정책사업담당자인 공무원이 본인이 추진하는 사업이 인적 대상 사업도 아니고 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도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이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담당자와 컨설턴트, 그리고 사업담당자 사이에서는 사업의 선정 적절성을 두고 갈등이 유발된다.

사업담당자의 경우 성평등 및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해가 불투명한 상황이기에 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고, 전문가 입장에서는 광의의 의미에서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해 분석평가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요구된다.

제 3 장

16개 시·도 및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조사

..... 제1절 설문조사지 개발을 위한 사전 조사

제2절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1차 조사

..... 제3절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2차 조사

제 3 장 16개 시·도 및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조사

제1절 설문조사지 개발을 위한 사전 조사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선정을 위한 지표(항목)를 개발하기 위하여 두 번에 걸쳐 전문가 조사가 실시되었다. 1차로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다섯 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모든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발송할 설문조사지 개발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1차 조사를 통하여 전문가용 설문지를 최종 구성한 후,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및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과 지표 개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1. 설문조사지 개발을 위한 사전 전문가 조사 개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항목)를 개발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경험이 없었던 만큼, 사전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요했다.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설문지 개발의 과정에서 소수이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설문지를 구성하고, 설문조사 수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5명의 전문가가 사전 설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들은 대전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있는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센터장,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하여 식견을 지니고 있으며 오랫동안 젠더전문가로 연구를 수행해온 연구자, 그리고 행정학자이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로 활동해온 대학교 교수로 구성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조사 수행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3-1>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지 개발을 위한 사전
젠더전문가조사 개요**

<p>조사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전문가 5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2인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1인 ▷ 젠더 전문가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1인 ▷ 젠더 전문가이면서 행정학 전문가 1인
<p>조사 일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2월 27일 ~ 3월 7일
<p>조사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을 통한 설문지 발송 ■ 설문지 작성 후 이메일로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회신
<p>조사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방식에 대한 의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외’와 ‘선정’의 경우로 대상 과제를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한지 의견 조사 ▷ 대상 사업 선정의 방법에 대한 의견 조사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의 경우를 결정할 수 있는 지표 (항목) 안 에 대한 의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고려하고 있는 제외의 경우(안)에 대한 의견 조사 ▷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고려하고 있는 제외의 경우(안) 외 에 제시될 수 있는 제외의 경우 제시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건이나 주요 변수, 상황 제시 ■ 성별영향분석평가 선정의 경우를 결정할 수 있는 지표 (항목) 안 에 대한 의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고려하고 있는 선정의 경우(안)에 대한 의견 조사 ▷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고려하고 있는 선정의 경우(안) 외 에 제시될 수 있는 선정의 경우 제시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로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이나 주요 변수, 상황 제시
<p>조사 결과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지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질문 항목의 구성 및 내용에 반영

2. 사전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1) 대상 사업 선정 기준 설정에 대한 의견

현재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 지침 상 과제 선정의 방식이 ‘제외’와 ‘선정’으로 이분화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사전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5인의 전문가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의 설정이 “제외”와 “선정”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표 3-2〉 대상 사업 선정 기준 설정에 대한 사전 젠더전문가 조사 결과

구 분	내 용	세부 내용
선정 기준 설정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과제 선정 기준 각각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필요 자발적인 과제 선정 분위기 조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선정 기준 각각에 대해 의견을 수렴 전문가와 공무원 간담회를 통한 대상과제 선정기준 세부항목 적절성 검토 과제 수 정도만 제시하고 실과별 자체적으로 과제 선정
선정 기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과제 선정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방식 필요 환류 결과 및 개선 여부 반영할 수 있는 기준 설정 필요 지자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 설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본 목적은 환류를 통한 정책 개선에 있음을 주지할 필요 정책개선 현황이나 추이를 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이를 과제 선정 과정에 반영 지역에 따라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나 핵심 사업에 대해 평가서를 작성하고 공표할 필요 있음

사전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를 선정해서 평가서를 작성하거나, 평가서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과제를 제외하는 방식이 현재는 필요하지

만, 좀 더 개선된 기준 설정과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위와 같이 제시했다.

선정 방식에 있어, “제외” 아니면 “선정” 이라는 구분 아래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기준의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각 실과에서 자발적으로 대상 과제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여지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또한, 현 지침에는 대상 사업 선정의 기준이 “인적 대상 사업,” “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달리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의 정책 사업이기도 하다. 즉, 지자체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특정 영역의 과제를 선정한다든가, 이전 수행된 평가 결과 환류 여부를 반영하여 대상 과제를 선정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선정 방식 및 기준이 제시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여성가족부 지침을 활용하여 선정의 경우 기준에 의거해 과제들을 선정했을 때, 평가서 작성이 꼭 필요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활용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수행한다고 할 때, 이 제도 추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적절성에 근거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어 보고 최종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금 가장 성별영향 분석평가가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많은 사업들 중 선택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2) 대상 사업 제외 기준 및 지표 내용에 대한 의견

현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 지침 체크리스트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즉 대상 사업 제외의 경우가 “여성의 지위 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으로 명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명시된 제외의 경우 외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제외의 경우 7개를 더 제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사전 조사를 통하여 젠더전문가들에게 문의한 제외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표 3-3> 사전 젠더전문가 조사 시 제안된 분석평가 대상 제외의 경우

1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2	전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3	위탁사업 전체
4	위탁사업인 경우, 수행기관이 법인인 사업
5	차년도 사업 계획이 없는 사업
6	비예산 사업
7	예산규모가 100만원 미만 사업
8	3년 내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미 시행된 사업

1번 제외의 경우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있는 “여성의 지위 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을 의미한다. 2~8번 까지의 사업은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분석평가 제외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업들이라 볼 수 있다.

사전 전문가조사를 통하여 5인의 전문가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제외의 기준이 위와 같이 제시된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표 3-4〉 대상 사업 제외 기준에 대한 사전 젠더전문가 조사 결과

구 분	내 용	세부 내용
위탁사업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 수행이 아닌, 위탁 운영 사업이라고 해도 분석 평가는 실행할 필요 있음. -중앙부처 일괄 시행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사업이라 해도 시민에게 성차별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에는 분석 평가 필요함. -직접 운영 안해도 추진체계 개선이나 평가 점검을 통해 개선이 가능함. -중앙부처 주도로 일괄적 지침에 의거 시행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제외하는 것이 필요함.
비예산 사업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예산 사업이라도 분석평가는 가능함. -성별통계 생산 가능하면 평가해야 함. -비예산이거나 1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제외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분리 통계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비예산 사업이어도 분석평가 가능함.
예산 규모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규모가 제외의 기준이 될 수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예산이 100만원 미만이라도 해도 확대 가능성이 있다면 분석평가 필요함.
3년 내 분석평가가 이미 시행된 사업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석평가가 최근 3년 내 이미 실시된 경우, 이력을 별도 명기하고 정책개선 사항 없는지 파악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 관리제’ 를 통해 성별영향 분석평가의 효과성을 제고 -개선 실적을 파악하고 제외하는 것 가능함. -일반 분석평가에서는 제외하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혹은 모니터링 대상은 될 수 있음.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기간에 대한 고려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몰사업 및 1회성 행사의 경우 제외할 수 있음.
사업수혜 대상에 대한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기반 시설 설치-토목사업은 제외되는 것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 하수관, 지하수보전, 사망사업, 임업 등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은 제외되는 것이 필요함.

3) 대상 사업 선정 기준 및 지표 내용에 대한 의견

현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 지침 체크리스트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의 기준으로, 즉 대상 사업 선정의 경우가 “인적 대상 사업” “시설설치·개선 사업” 그리고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으로 명시되어 있다. 본 사전 젠더전문가 조사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명시된 제외의 경우 외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선정의 경우 13개를 더 제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사전 조사를 통하여 젠더전문가들에게 문의한 선정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표 3-5> 사전 젠더전문가 조사 시 제안된 분석평가 대상 선정의 경우

1	인적대상사업(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2	시설설치 개선사업(공원, 도로, 주거 등)
3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4	여성대상 사업이 아니면서 여성의 기본권(건강, 안전 등)과 연관된 사업
5	지자체 주요 시책 사업
6	단체장의 공약 사업
7	지자체 자체추진 사업
8	중장기 재정계획 사업
9	매년 지속되는 사업
10	당해 연도 신규사업
11	당해 연도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주요 이벤트 혹은 축제 사업
12	최근 3년 내 민원이 발생한 사업
13	예산규모가 10억원 이상 사업

1~3번 선정의 경우 예시는 현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 지침에 나타나 있는 대상 과제 선정의 경우이다. 4번부터 13번 까지의 사업 속성 예시는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고려하고 있는 선정의 경우이다. 5인의 젠더 전문가들은 사전 조사를 통

하여 위 13개 선정의 경우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표 3-6> 대상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한 사전 젠더전문가 조사 결과

구 분	내 용	세부 내용
주요 계획과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재정계획과의 연계 사업 선정 -도시발전계획, 행복생활권 계획 등 주요 도시계획과의 연계 선정 -지역사회복지계획 과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가 주요 발전계획으로 수립한 각종 계획들을 참고하여 사업 선정에 반영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시민 직접 수혜가 가능한 사업들을 선정
성평등 지수 산출 결과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불평등 현황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가족부가 발표하는 ‘지역성평등 지수’ 를 활용한 대상 선정 -성평등 지수가 낮아 성불평등이 큰 부문의 사업을 선정하여 개선을 유도 -성평등지수의 활용은 정책 개선 효과 및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 주류화 제도 간 연계 필요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지 예산서 상 성과목표 미달되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이슈 및 화제성에 대한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론이나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 선정 -여성의 삶을 표현하는 주제어 등 비전 설정을 통한 사업 선정 -시와 기초지자체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하여 자주 홍보되는 사업들을 우선 선정 -여성의 삶의 실 향상을 위한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주로 선정 -일반 분석평가에서는 제외하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혹은 모니터링 대상은 될 수 있음.

<p>시민 참여 방식에 대한 고려</p>	<p>-모니터링과의 연계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연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와의 연계 -민원발생 사업 선정 취지</p>	<p>-지역 여성들이 참여해서 모니터링한 주제를 반영하여 과제 선정 -주민참여예산제(지역회의, 우선순위 사업 선정 등)에서 올라오는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이 제안하는 사업 -민원발생된 사업을 우선 평가분석하는 취지에 공감함.</p>
<p>선정의 자율성에 대한 고려</p>	<p>-사업담당자의 참여 및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 모색</p>	<p>-사업담당공무원이 참여해서 과제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함. -공무원 ‘타운홀 미팅’을 통한 과제 선정</p>

중앙 및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대상 설문지 개발을 위한 사전 조사에서 5명의 전문가들은 선정의 경우에 있어, 시민과 공무원의 참여를 통한 과제 선정을 강조했다. 지역 여성들이 수행한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의 제안 수용,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안 수용 등 민관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분석 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중장기재정계획, 도시발전계획 등 지자체의 굵직한 계획 수립과의 연계가 중요함도 언급되었다. 성 주류화의 핵심 목적이 모든 정책 사업으로의 젠더 관점 확산이라면, 주요한 지자체 계획 사업들을 평가 분석함으로써 성 주류화의 목적을 추진할 필요가 크다.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성평등 지수 상 취약한 부문의 사업들을 선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성평등 현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보고서는 지역별로 ‘대표성 제고’ ‘경제참여와 기회’ ‘가정과 안전한 삶’ 그리고 ‘복지’ 영역별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성별격차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그 결과를 근거로 성별 격차가 뚜렷한 영역의 사업들을 평가 분석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전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지역 내에서 화제나 이슈가 된 정책 사업들을 우선 선정하여 평가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또한 제기했다. 지역별 현안이 언론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놓치지 않고 검토한 뒤 평가 분석 대상 사업 선정에 반영 하자는 것이다. 매년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 분석보다 이슈가 된 사업들을 고려하게 되면, 보다 시민의 삶 현황이나 트렌드 등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3.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조사 설문안 도출 결과

사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앙 및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젠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평가 분석 대상 과제 선정 지표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첫째, 사전 조사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평가 분석 ‘제외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었다. 지역 젠더 전문가들에게 다음의 11개 사업 속성을 제시한 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는가를 물었다.

〈표 3-7〉 1차 지역 전문가 조사를 위한 대상 사업 제외의 경우

연번	내 용(사업의 속성)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성농어업인 육성,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등)
2	전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3	위탁사업인 경우, 수행기관이 법인
4	차년도 사업 계획이 없는 사업
5	비예산 사업
6	예산규모가 100만원 미만 사업
7	사업 대상자/참여자/수혜자 통계가 전혀 없는 사업
8	1회성 행사로 공무원의 재량이 거의 없는 사업
9	토목사업(하천공사, 하수관신설, 지하수보전, 사방사업 등)
10	공무원 내부/청사/후생복지 관련한 사업 (복지카드, 법제 및 소송업무, 기계장비유지관리 등)
11	집행내역이 물품 관련한 예산만 있는 사업

둘째, 사전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평가 분석 대상 사업 ‘선정의 경우’ 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었다. 지역 젠더 전문가들에게 다음의 24개 사업 속성을 제시한 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에서 선정될 필요가 있는가를 물었다.

〈표 3-8〉 1차 지역 전문가 조사를 위한 대상 사업 선정의 경우

연번	구분
1	인적대상사업(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2	시설설치 개선사업(공원, 도로, 주거 등)
3	연번 1,2번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4	단체장의 공약 사업
5	지자체 자체추진 사업
6	중장기 재정계획 사업
7	매년 지속되는 사업
8	당해 연도 신규사업
9	‘주요 이벤트 혹은 축제’ 중에서 예산규모가 5,000만원 이상 사업
10	최근 3년 내 민원 발생한 사업
11	예산규모가 1억원 이상 사업
12	대전시에서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었던 여성관련 이슈와 관련한 사업
13	성불평등, 여성관련 논문이나 자료가 많이 생산되었던 주제, 부문이나 분야의 사업
14	지역 성평등 지수에서 점수가 낮아 성 불평등이 큰 부문 또는 지역 성평등 지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
15	기관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
16	사업의 주요 대상 집단이 성별로 구분되는 사업
17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또는 여성정책관련위원회)가 제안하는 사업
18	국정과제
19	수혜자 통계가 생산되는 사업
20	계획수립 사업(도시발전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21	2012년, 2013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사업 중 성과목표 미달의 사업
22	2012년,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보고서가 작성되지 않고, 성인지 예산서만 작성된 사업
23	2012년,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지역회의, 우선순위 사업선정 등)에서 예산위원이 상정하는 사업
24	2012년, 2013년 지역여성이 참여한 모니터링 주제 반영 사업

제2절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1차 조사

1.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대상 1차 조사 개요

5명의 전문가가 사전에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지를 구성하고 조사를 추진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있는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전담연구원을 비롯하여 전국에 있는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센터장과 전담연구원 및 관련 연구원이 설문문에 응답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 수행 개요는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및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종사하는 센터장, 전담연구원 및 연구원 32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 총 수 31명 ▷ 센터장 14명, 전담연구원 및 연구원 17명
조사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3월 18일~28일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협조 공문에 의한 서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및 전담연구원, 연구원 대상 개별 이메일 발송 ■ 설문지 박성 후 개별적으로 이메일 회신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제외의 경우 기준과 지표안을 제시하고 동의 정도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표 (항목)에 대하여 전혀 제외할 필요가 없는지, 혹은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지 숫자로 표기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의 경우 기준과 지표안을 제시하고 동의 정도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표 (항목)에 대하여 전혀 선정할 필요가 없는지, 혹은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지 숫자로 표기
조사 결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대전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구성에 반영

2.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1차 조사 결과 분석

1)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제외의 경우

사전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 시 제외될 필요가 있는 사업, 지표 및 항목의 예는 모두 11개가 제시되었다.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들은 11개 항목에 대하여 각기 얼마나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를 숫자 1에서 10의 정도로 표기했다. 전혀 제외할 필요가 없는 사업 또는 항목이라면, ‘1’을,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 사업 또는 항목이라면 ‘10’을 기입할 수 있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선정 시 제외가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두 11개의 제외의 경우가 선정되었다.

<표 3-9>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제외의 경우 사례

설문조사에 제시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의 경우 사업 사례 및 항목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여성농어업인 육성,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등)
전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위탁사업인 경우 수행기관이 법인인 사업
차년도 사업 계획이 없는 사업(일몰 사업)
비예산 사업
예산규모가 100만원 미만 사업
사업 대상자/참여자/수혜자 통계가 전혀 없는 사업
1회성 행사로 공무원의 재량이 거의 없는 사업
토목사업(하천공사, 하수관신설, 지하수보전, 사방사업 등)
공무원 내부/청사/후생복지 관련한 사업 (복지카드, 법제 및 소송업무, 기계장비유지관리 등)
집행내역이 물품 관련한 예산만 있는 사업

설문조사에 제시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선정 시 제외를 고려해야 할 사업 항목에 대하여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동의 정도를 보여주었다. 동의 정도 점수 만점 10점을 기준으로 응답 결과 평균을 산출했으며, 표준편차와 변이계수도 산출하여 각 항목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 정도가 얼마나 상의한지 파악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에 전문가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 평균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0>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제외의 경우 조사결과 (N=31, 단위: 점)

순 위	항목	평균	표준 편차	변이 계수
1	집행내역이 물품 관련한 예산만 있는 사업	8.10	2.59	0.32
2	일회성행사로 공무원의 재량이 거의 없는 사업	8.00	2.49	0.31
3	차년도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	7.35	2.66	0.36
4	여성의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6.94	2.67	0.38
5	예산규모가 100만원 미만	6.23	2.65	0.42
6	토목사업	5.77	2.93	0.50
7	공무원 내부 후생복지 관련한 사업	5.77	2.75	0.47
8	비예산 사업	5.23	2.78	0.53
9	전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4.81	2.96	0.61
10	사업대상 참여수혜 통계가 전혀 없는 경우	4.23	2.53	0.59
11	위탁사업인 경우 수행기관인 법인인 경우	3.97	2.39	0.60

위 결과는 지역의 젠더 전문가들이 특정 사업의 속성들이 얼마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가, 그래서 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선 평균을 살펴보면, ‘집행 내역이 물품 관련한 예산만 있는 사업’ 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필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성 행사로 공무원의 재량이 거의 없는 사업’도 제외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도를 보였다.

위 설문결과는 2014년 대전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과정에서 제외의 경우 지표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따라서 전문가들 간 의견의 수렴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도 최종 지표 선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었다.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정도가 높게 나타나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제외 대상 지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평균값 외에 표준편차와 변이계수를 고려했다.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 다소 각 문항별로 표준편차 값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고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는 질문이기 때문에, 연구자는 각 사업 속성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일치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전문가들의 응답 편차(산포도, dispersion)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²⁾. 그러나 표준편차값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사업 속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상당히 분산된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표준편차는 개별 관측값들이 평균과 떨어져 있는 정도를 표준화한 것으로, 표준편차 값이 작을수록 평균값에서 변량들의 거리가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위 표의 표준편차 값들은 10점 척도 질문에 대한 결과값 치고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되어 조사 결과 자체에 대한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변이계수를 측정하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정도에 대한 신뢰성을 다시 검증해 보았다.

각 문항별 응답의 균질성을 살펴보기 위해 변이계수(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참고했다. 변이계수는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각각의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누어³⁾ 구해진다. 변이계수

2) 전문가 설문조사 전에는 “관측값이 모두 동일하게 나와, 표준편차가 0이 될 가능성”을 염두할 정도로 관측값의 산포가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함.

3) 변이계수 산출식: $CV = \frac{\sigma}{\bar{x}}$

를 통해 각 문항별로 응답자들이 얼마나 동질적인 응답을 했는지 추정할 수 있다.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에 있어, 이 변이계수가 0.5이하인 경우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없는 것으로 본다(노승용, 2006).

분석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한 상위 5개 사업들은 모두 변이계수가 0.5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한 전문가들 간 동질성이 확보되어 델파이 조사로서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의 경우

사전 전문가 조사와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의견, 연구자의 의견을 통합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 과정에서 선정될 필요가 있는 사업, 지표 및 항목의 예는 모두 24개가 제시되었다.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들은 24개 항목에 대하여 각기 얼마나 선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숫자 1에서 10의 정도로 표기했다. 전혀 선정할 필요가 없는 사업 또는 항목이라면, '1' 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업 또는 항목이라면 '10' 을 기입할 수 있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선정과정에서 선정될 필요성을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두 24개의 선정의 경우가 설문에 제시됐다.

〈표 3-11〉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선정의 경우 사례

항목
지역 성평등지수에서 점수가 낮아 성불평등이 큰 부문 또는 지역 성평등 지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
인적대상사업(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1번과 2번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산업 육성, 연구개발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또는 여성정책관련 위원회)가 제안하는 사업
2012년, 2013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 중 성과목표 미달 사업
시설설치 개선 사업(공원, 도로, 주거 등)
지자체 자체 추진 사업
지역 여성이 참여한 모니터링 주제 반영 사업
기관 중장기 발전 계획에 포함된 사업
계획수립사업(도시발전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단체장 공약 사업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었던 여성관련 이슈 사업
중장기 재정 계획 사업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예산위원이 상정하는 사업
당해연도 신규 사업
성불평등관련 논문이나 자료가 많이 생산되었던 주제, 부문의 사업
2012년,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서가 작성되지 않고 성인지 예산서만 작성된 사업
국정과제
사업의 주요 대상 집단이 성별로 구분 되는 사업
수혜자 통계가 생산되는 사업
예산 규모가 1억원 이상 사업
‘주요 이벤트 혹은 축제’ 중에서 예산 규모가 5천만원 이상 사업
매년 지속되는 사업
최근 3년 내 민원 발생한 사업

설문조사에 제시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선정 과정에서 선정을 고려해야 할 사업 항목에 대하여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동의 정도를 보여주었다. 동의 정도 점수 만점 10점을 기준으로 응답 결과 평균을 산출했으며, 표준편차와 변이계수도 산출하여 각 항목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 정도가 얼마나 상의한지 파악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로 선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전문가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 평균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2〉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선정의 경우 조사결과 (N=31, 단위: 점)

순위	항목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⁴⁾
1	지역 성평등지수에서 점수가 낮아 성불평등이 큰 부문 또는 지역 성평등 지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	9.29	1.677	0.180
2	인적대상사업(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9.26	1.673	0.180
3	1번과 2번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산업 육성, 연구개발사업)	8.74	1.879	0.214
4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또는 여성정책관련 위원회)가 제안하는 사업	8.55	1.841	0.215
5	2012년, 2013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 중 성과목표 미달 사업	8.52	1.768	0.207
6	시설설치 개선 사업(공원, 도로, 주거 등)	8.48	1.998	0.235
7	지자체 자체 추진 사업	8.35	1.799	0.215
8	지역 여성이 참여한 모니터링 주제 반영 사업	8.32	1.815	0.218
9	기관 중장기 발전 계획에 포함된 사업	8.23	2.012	0.244
10	계획수립사업(도시발전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8.19	2.182	0.266
11	단체장 공약 사업	8.19	2.286	0.279
12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었던 여성관련 이슈 사업	8.16	2.051	0.251
13	중장기 재정 계획 사업	8.16	2.354	0.288
14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예산위원이 상정하는 사업	7.97	1.923	0.241
15	당해연도 신규 사업	7.90	2.006	0.253
16	성불평등관련 논문이나 자료가 많이 생산되었던 주제, 부문의 사업	7.90	2.226	0.281
17	2012년,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서가 작성되지 않고 성인지 예산서만 작성된 사업	7.87	2.125	0.269

순 위	항목	평균	표준 편차	변이 계수 ⁵⁾
18	국정과제	7.81	2.072	0.265
19	사업의 주요 대상 집단이 성별로 구분 되는 사업	7.74	2.097	0.270
20	수혜자 통계가 생산되는 사업	7.65	2.138	0.279
21	예산 규모가 1억원 이상 사업	7.39	1.838	0.248
22	‘주요 이벤트 혹은 축배’ 중에서 예산 규모가 5천만원 이상 사업	7.23	2.156	0.298
23	매년 지속되는 사업	7.10	2.103	0.296
24	최근 3년 내 민원 발생한 사업	7.00	1.915	0.273

위 결과는 지역의 젠더 전문가들이 특정 사업의 속성들이 얼마나 성별영향분석 평가 대상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평균이 높은 순서대로 어떠한 사업의 속성들이 분석평가 대상이 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지역 성평등지수 점수가 낮은 사업 혹은 성평등 지표 상 점수를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 이 평가 대상이 될 필요성에 가장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정 지표 혹은 사업의 속성은 현 여성가족부의 분석평가 지침 상 대상 과제 선정 기준에는 없는 항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에 대한 필요성 공감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왔다는 것은 지역 전문가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수행의 목적이 성평등한 사회 및 정책의 변화에 있고, 이를 계량화해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수단인 성평등 지수와 분석평가 제도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현 여성가족부 발행 분석평가 지침 상 선정의 기준인 ‘인적대상 사업’ 이 그 다음으로 평가분석 필요성이 높은 사업으로 꼽혔다. 이와는 달리, ‘시설설치 개선 사업’ 은 평균점수에 기초한 우선순위 상 6위에 머물렀으며,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

4) 소수점 네 자리 이하 모두 버림.

5) 소수점 네 자리 이하 모두 버림.

적인 기준인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이 세 번째로 선정 필요성 높은 사업으로 선택됐다.

변이계수 측정 결과를 검토했을 때, 평균값이 높은 상위 두 개의 사업 속성이 변이 계수도 가장 낮게 나타나, 응답자들 간 합의의 정도가 높았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낮은 성평등 지수 사업’ 과 ‘인적 대상 사업’ 은 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성이 높은 사업으로 지역 전문가들이 상당히 일치된 공감도를 보이며 선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설설치 개선 사업’ 의 경우 변이계수가 평균값 상 낮은 우선 순위 에 있는 ‘지자체 자체 추진사업’ 이나 ‘지역 여성이 참여한 모니터링 주제 반영’ 사업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설 설치 개선 사업을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성에 대한 지역 전문가들 간 공감의 순위 낮은 두 사업보다 더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시설 설치 개선 사업의 속성에 대한 전문가들 간 의견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며, 이 사업을 평가 분석 대상으로 선정 시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시설설치 및 개선 사업’ 을 제외하고는 평균값 높은 순위에 따라 변이계수는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어, 대체로 높은 평균값은 그에 따른 전문가들 간 공감도도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정리 및 시사점

첫째, 2014년 대전광역시 및 기초자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시 제외가 필요한 사업의 속성들로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들의 설문 결과 평균값이 높은 상위 5개 사업(속성)은 다음과 같다:

- 집행내역이 물품 관련한 예산만 있는 사업
- 일회성행사로 공무원의 재량이 거의 없는 사업
- 차년도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

- 여성의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예산규모가 100만원 미만의 사업

둘째, 2014년 대전광역시 및 기초자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시 선정이 필요한 사업의 속성들로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들의 설문 결과 평균값이 높은 상위 10개 사업(속성)은 다음과 같다:

- 지역 성평등지수에서 점수가 낮아 성불평등이 큰 부문 또는 지역 성평등 지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
- 인적대상 사업(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산업 육성, 연구개발사업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또는 여성정책관련위원회)가 제안하는 사업
- 2012년, 2013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 중 성과목표 미달 사업
- 시설설치 개선 사업(공원, 도로, 주거 등)
- 지자체 자체 추진 사업
- 지역 여성이 참여한 모니터링 주제 반영 사업
- 기관 중장기 발전 계획에 포함된 사업
- 계획수립사업(도시발전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셋째,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대상과제 선정과 제외 기준에 대한 의견은 개인 간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변이계수를 통하여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선정 기준의 확정을 위하여 보다 수렴된 대상과제 선정 기준 제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제3절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2차 조사

1.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대상 2차 조사 개요

전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는 각 11개와 24개의 사업 속성들이 평가분석 대상과제로 제외될 필요가 있는가와 선정될 필요가 있는가를 묻는 것이 목적이었다. 1차 조사는 현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평가분석 제외의 경우와 선정의 경우를 보완해서 대전광역시 자체적인 제외와 선정의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차 전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대상 조사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보다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탐색하고자 했다. 10개의 선별된 사업의 속성들을 두고 선정의 기준들을 1차에 비해 다양하게 설정해 두고 사업들의 평가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10개의 사업들은 1차 조사에서 전문가들 간 수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속성들이었으며, 이번 2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크리스트 결과 분석 시 가중치 산정 및 전문가와의 선정 결과 논의 시 참고할 수 있었다. 또한 보다 개선된 2015년 체크리스트를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10개 사업 속성을 선별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적절성을 1차에서의 ‘필요성’ 뿐 아닌, ‘시민의 삶에 미칠 파급력 혹은 영향력’ 과 ‘성평등한 환류 또는 개선 가능성’ 차원에서 검토했다. 각 선정 기준을 가지고 10개의 속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응용하여 분석했다.

이번 2차 설문조사에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있는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전담연구원을 비롯하여 전국에 있는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센터장과 전담연구원 및 연구원이 설문에 응답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설문조사 수행 개요는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및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종사하는 센터장, 전담연구원 및 연구원 32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 총 수 30명⁶⁾ ▷ 센터장 14명, 전담연구원 및 연구원 16명
조사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6월 16일~30일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협조 공문에 의한 서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및 전담연구원, 연구원 대상 개별 이메일 발송 ■ 설문지 작성 후 개별적으로 이메일 회신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의 경우 기준-영향력과 환류 가능성에 따른 평가 대상 선정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표 (사업의 속성)에 대하여 시민의 삶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공감 정도를 숫자로 표기 ▷ 각 지표 (사업의 속성)에 대하여 성평등한 환류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공감 정도를 숫자로 표기 ■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통한 사업 속성별 적절성 점검
조사 결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대전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결과 분석 시 가중치, 선정 논의 시 참고 자료로 활용 ■ 2015년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에 활용

2.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2차 조사 결과 분석

1)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대상 선정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는 마케팅 및 경영분야에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데서 시작되었다(Martilla · James, 1977). 현재 처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사항을 빠르고 쉽게 접근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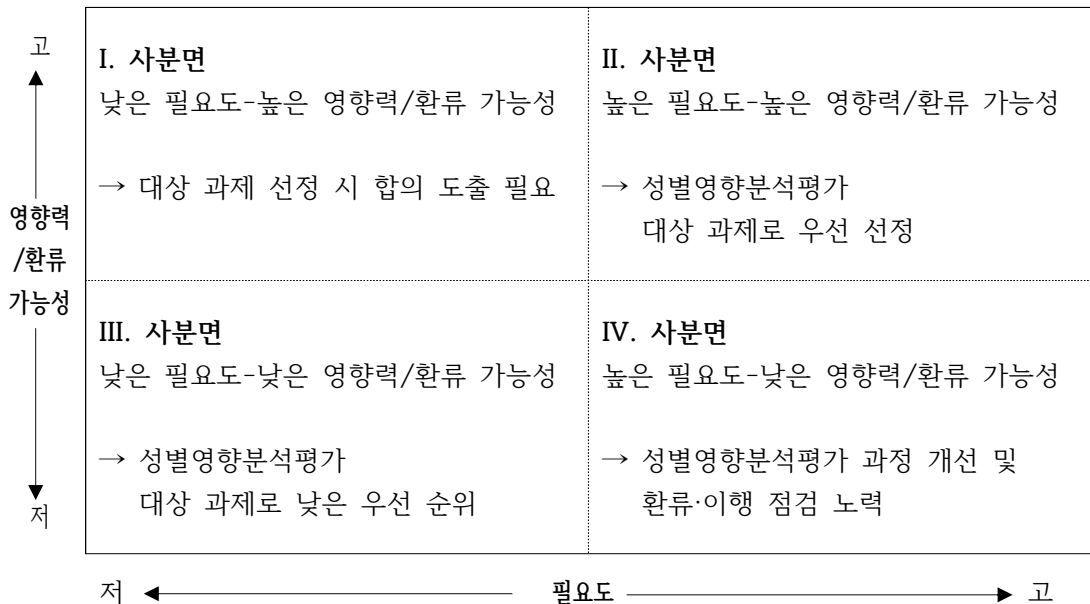
6) 앞서 실시한 1차 조사와 모두 동일인들이며, 1명은 퇴사한 관계로 2차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수 있고, 대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IPA는 중요도(Importance)와 성취도(Performance)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하는 기법인데, 비용과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실무자들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며, 개선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IPA의 중요도와 성취도를 ‘필요도-영향력-환류가능성’으로 대체하여 분석하였다. ‘얼마나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필요한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시민에 삶에 미칠 영향력은 얼마나 큰가,’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성평등한 변화는 얼마나 가능한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업 속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Martilla와 James(1977)의 중요도-성취도 분석틀을 본 연구에 적합할 수 있도록 필요도-영향력-환류 가능성 분석틀로 변환한 모형은 다음의 그림으로 정리된다.

[그림 3-1] IPA를 활용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의 틀



I. 사분면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필요성은 낮게 평가되지만, 높은 파급력이나 환류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높은 개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지만, 제도의 본래 취지 혹은 성평등 가치에 대한 해석과 충돌이 예상되는 사업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I. 사분면에 속하는 사업들은 대상 사업 선정 시 협의와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볼 수 있다. II. 사분면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도 높고, 이후 파급력이나 환류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사업 속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업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로 우선 선정할 필요성이 크다. III. 사분면에 속한 사업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으로서의 필요성도 낮게 평가되고 있고, 파급력이나 성평등한 정책 개선 가능성도 낮게 예측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업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시 낮은 우선순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IV. 사분면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은 높지만, 시민의 삶에 미칠 영향력 또는 환류 가능성이 낮은 정책사업 속성을 의미한다. 이 사분면에 속한 사업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보다 성실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평가 후 실질적인 정책의 성평등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류·이행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IPA를 위하여 앞서 수행된 1차 조사의 필요도 결과에 따라 몇몇 사업들을 선택해 보기로 했다. 표준편차와 변이계수 등을 통하여 젠더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정도를 파악하고, 표준편차와 변이계수에 따라 수렴의 정도가 높은 순서에 따라 IPA를 위한 사업을 선택하기로 했다. IPA 대상 사업 속성 10개는 다음과 같다.

<표 3-13> IPA 대상 사업 선정 결과

영역	사업의 속성
수혜자 직접 대상	인적대상사업(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도시 인프라	시설설치 개선사업(공원, 도로, 주거 등)
지자체 자율	지자체 자체추진 사업
확제성	지역 성평등 지수에서 점수가 낮아 성 불평등이 큰 부문 또는 지역 성평등 지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
	최근 3년 내 민원 발생한 사업
예산 규모	예산규모가 1억원 이상 사업
시민 제안 (거버넌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또는 여성정책관련위원회)가 제안하는 사업
	2012년,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지역회의, 우선순위사업선정 등)에서 예산위원이 상정하는 사업
	2012년, 2013년 지역여성이 참여한 모니터링 주제 반영 사업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2012년, 2013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사업 중 성과목표 미달의 사업

IPA에 10개의 사업 속성만이 활용된 이유는 24개 사업을 모두 대상으로 IPA를 하기에 조사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고, 앞서 밝힌 것처럼 사업마다 젠더전문가들의 의견 분산 정도가 예상보다 컸다는 점 때문이다.

2)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결과 분석

1차 필요성 분석에서 선정된 10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2차 영향력 및 환류 가능성 파악을 위한 IPA가 이루어졌다. 2차 조사에는 앞에 밝힌 바와 같이, 1명이 빠진 30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대응표본 t-test(paired samples t-test)를 해야 하는 IPA는 총 30명 전문가의 응답 결과만을 대상으로 실행되었으며, 따라서 IPA 결과에 제시된 평균과 표준편차는 앞서 제시된 필요성 결과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 필요성-영향력 분석

특정한 성격을 지닌 다음 10개의 사업들이 얼마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얼마나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평균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행 필요성과 평가를 통한 영향력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 검증을 위한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이다.

<표 3-14>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기준의 필요성과 영향력 차이

사업의 속성	필요성		영향력		필요성 -영향력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적대상	9.267	1.701	8.700	0.988	0.567	1.809	0.081
시설설치	8.533	2.013	8.800	1.031	-0.267	-0.701	0.489
지자체 자체추진	8.300	1.803	7.500	1.383	0.800	2.449	0.021*
3년 내 민원발생	7.067	1.911	6.600	1.453	0.467	1.259	0.218
예산규모 1억 이상	7.367	1.866	6.433	1.455	0.933	3.392	0.002**
낮은 성평등 지수	9.267	1.701	8.233	1.357	1.033	2.448	0.021*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 제안	8.533	1.871	7.900	1.583	0.633	1.773	0.087
성인지예산 성과목표 미달	8.500	1.796	6.533	1.548	1.967	4.993	0.000**
주민참여예산 위원 제안	7.933	1.946	7.433	1.478	0.500	1.494	0.146
모니터링 주제	8.300	1.841	8.167	1.555	0.133	0.331	0.7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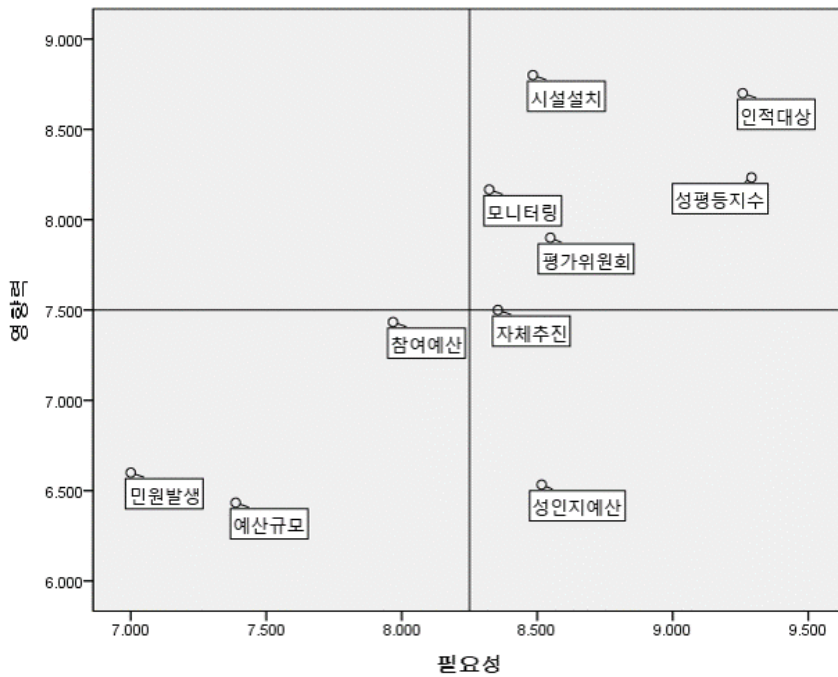
* p<0.05, ** p<0.01

필요도와 영향력 차이에서 4개 사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 사업 중 성과목표 미달의 사업’ 과 ‘예산규모가 1억원 이상인 사업’ 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행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한 반면, 이 두 사업의 특성 상 평가 후 시민의 삶에 미칠 영향(체감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젠더전문가들은 예상하는 것이다. ‘지역 성평등 지수가 낮아 성불평등이 큰 부

문 또는 지역 성평등 지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 과 ‘지자체 자체 추진 사업’ 의 경우도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이 사업들도 평가 필요성 보다는 시민의 삶에 미칠 영향력 혹은 체감도 면에서는 낮게 평가됐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성과 평가를 통한 영향력에 대한 사업 항목별 IPA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2]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기준의 필요성-영향력 IPA



필요성도 높으면서 평가 수 시민의 삶에 미칠 영향력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들은 ‘인적대상,’ ‘낮은 성평등지수,’ ‘시설설치개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제안,’ 그리고 ‘시민모니터링 주제’ 사업들이다. II-사분면에 위치한 이 사업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로 우선 선정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필요성도 낮고, 영향력도 낮을 것으로 평가받은 사업들은 ‘최근 3년 내 민원발

생,’ ‘예산규모 1억원 이상,’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상정’ 사업들이다. 이 사업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선정에 있어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지자체 자체 추진’이나 ‘성인지 예산서 목표 미달 사업’은 평가 필요성은 높지만 시민의 삶에 미칠 영향력은 낮은 사업으로 IV-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후 이행점검을 통하여 시민의 삶에 미칠 영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필요성-환류가능성 분석

특정한 성격을 지닌 다음 10개의 사업들이 얼마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성평등한 환류/개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가에 대한 평균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업들을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행 필요성과 평가를 통한 성평등한 개선 가능성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 검증을 위한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했다.

<표 3-15>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기준의 필요성과 환류가능성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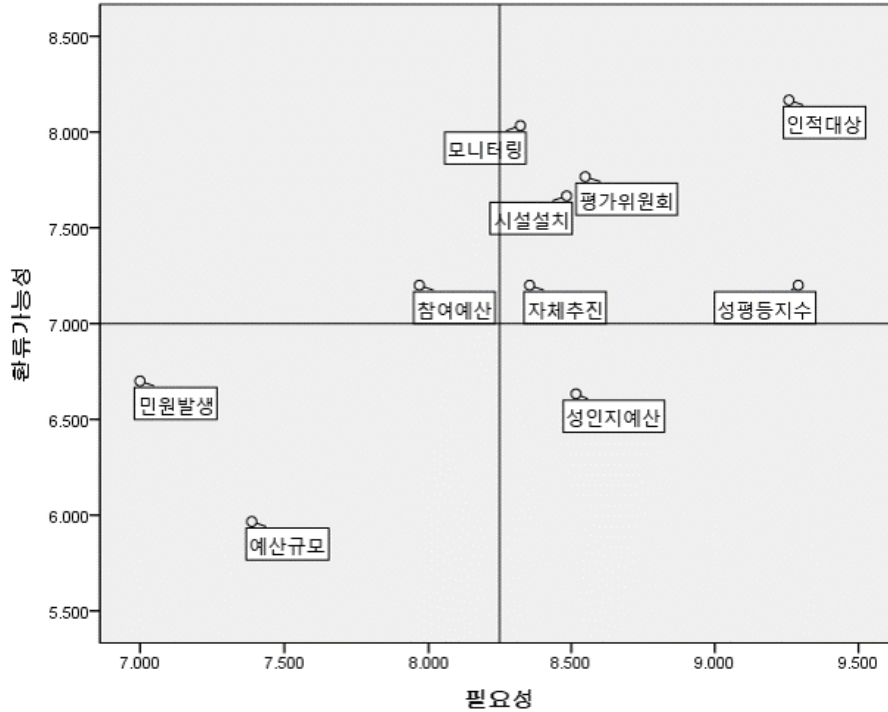
사업의 속성	필요성		환류가능성		필요성- 환류가능성	t	p
	인적대상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적대상	9.267	1.701	8.167	1.724	1.100	2.483	0.019*
시설설치	8.533	2.013	7.667	1.668	0.867	1.898	0.068
지자체 자체추진	8.300	1.803	7.200	1.448	1.100	2.559	0.016*
3년 내 민원발생	7.067	1.911	6.700	1.950	0.367	0.852	0.401
예산규모 1억 이상	7.367	1.866	5.967	1.217	1.400	4.527	0.000**
낮은 성평등 지수	9.267	1.701	7.200	1.883	2.067	4.496	0.000**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 제안	8.533	1.871	7.767	1.547	0.767	2.053	0.049*
성인지예산 성과목표 미달	8.500	1.796	6.633	1.450	1.867	4.731	0.000**
주민참여예산 위원 제안	7.933	1.946	7.200	1.349	0.733	1.779	0.086
모니터링 주제	8.300	1.841	8.033	1.847	0.267	0.618	0.541

* p<0.05, ** p<0.01

필요도와 성평등한 환류 가능성 간의 유의미한 평가차이를 보이는 사업은 6개로 나타난다. 앞서 필요도와 평가 후 시민의 삶에 미칠 영향력 간 평가차이를 보이는 사업이 4개였던 것에서 2개의 사업이 추가됐다. ‘인적대상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제안하는 사업’이 추가된 사업들인데, 필요성에 비하여 성별영향 분석평가 후 예상되는 성평등한 환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성과 평가를 통한 성평등한 환류가능성에 대한 사업 항목별 IPA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3]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기준의 필요성-환류가능성 IPA



앞서 논의된 필요도-영향력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지자체 자체 추진 사업’이 필요성도 높고 환류가능성도 높은 사업으로 분류된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환류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점수 평균이 낮는데 기인한다. 사분면의 중간 십자선은 필요성과 환류가능성의 평균을 의미하는데, 전반적으로 사업들에 대한 환류가능성 평가 평균 점수가 낮은 이유로 ‘자체추진사업’이나 ‘낮은 성평등 지수 사업’들이 II-사분면에 위치할 수 있었다. 같은 이유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이 상정하는 사업’이 III-사분면이 아닌 I-사분면에 위치하게 됐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선정에 있어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III-사
분면의 사업들은 ‘최근 3년 내 민원발생’ 과 ‘예산규모 1억원 이상’ 사업으로
나타났다.

(3) 영향력-환류가능성 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빠지고, 다음 10개의 사업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얼마나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성별영향분
석평가 후 성평등한 환류/개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가에 대한 전
문가들의 평균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업들을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행 후 영향력과 성평등한 개선 가능성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 검증을 위한 대응
표본 t-test를 실시했다.

<표 3-16>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기준의 영향력과 환류가능성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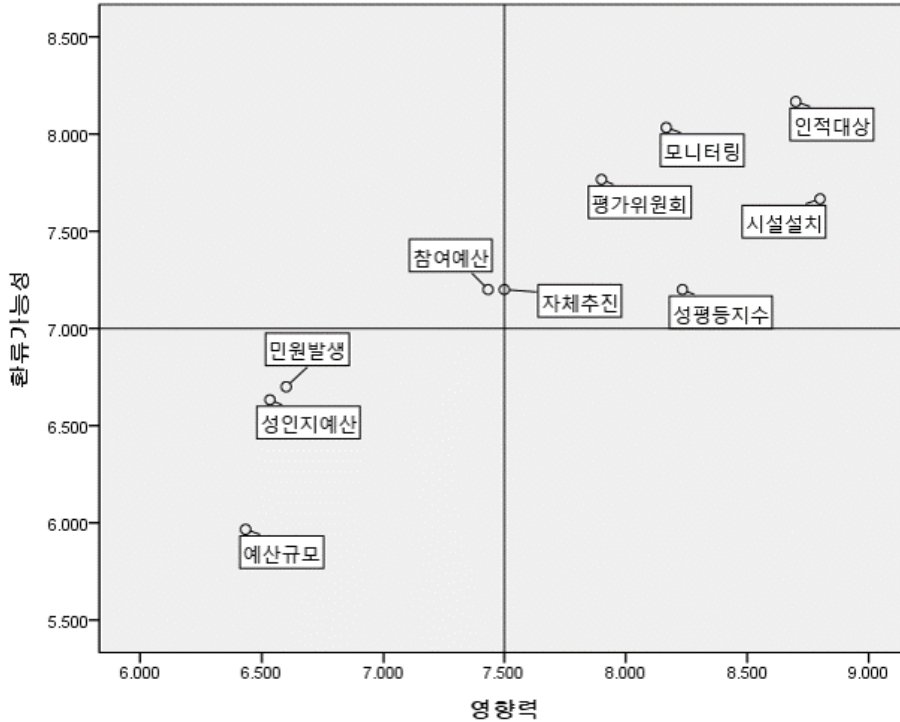
문항	영향력		환류가능성		영향력- 환류가능성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적대상	8.700	0.988	8.167	1.724	0.533	2.075	0.047*
시설설치	8.800	1.031	7.667	1.668	1.133	4.489	0.000**
지자체 자체추진	7.500	1.383	7.200	1.448	0.300	1.159	0.256
3년 내 민원발생	6.600	1.453	6.700	1.950	-0.100	-0.385	0.703
예산규모 1억 이상	6.433	1.455	5.967	1.217	0.467	2.191	0.037*
낮은 성평등 지수	8.233	1.357	7.200	1.883	1.033	3.568	0.001**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 제안	7.900	1.583	7.767	1.547	0.133	0.701	0.489
성인지예산 성과목표 미달	6.533	1.548	6.633	1.450	-0.100	-0.532	0.599
주민참여예산 위원 제안	7.433	1.478	7.200	1.349	0.233	1.097	0.282
모니터링 주제	8.167	1.555	8.033	1.847	0.133	0.510	0.614

* p<0.05, ** p<0.01

시민의 삶에 미칠 영향력과 평가후 예상되는 성평등한 환류 가능성 간의 유의미한 평가차이를 보이는 사업은 4개로 나타난다. ‘시설설치개선 사업’ 과 ‘성평등 지수가 낮은’ 사업이 p<0.01수준에서 영향력과 환류 가능성 간 견해차이가 있다. 특히 ‘시설설치 개선 사업’은 세 번의 IPA 실행 중 처음으로 유의미한 평균 격차를 나타냈는데, 전문가들은 ‘시설설치 개선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을 때 시민의 삶에 미치는 과급력이 큰 것에 비해, 성평등한 환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의 기준으로 성평등한 환류 가능성과 시민의 삶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도출되는 사업 항목별 IPA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4]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기준의 영향력-환류가능성 IPA



앞서 논의된 필요도-환류 가능성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II-사분면에 위치하는 사업들의 항목은 같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미달 사업’이 III-사분면에 새롭게 포함되었다.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미달 사업’은 평가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경우가 아니라, 시민의 직접적 공감도나 성평등한 개선을 고려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기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으로 분류된다.

3. 정리 및 시사점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성도 높으면서 시민의 삶에 미칠 영향력도 높게 평가되는 사업의 속성들은 ‘인적 대상 사업,’ ‘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제안하는 사업,’ ‘시민모니터링 주제 사업,’ 그리고 ‘낮은 성평등 지수 사업’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성도 높으면서 평가 후 성평등한 환류 가능성도 높게 예상되는 사업의 속성들은 ‘인적 대상 사업,’ ‘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제안하는 사업,’ ‘시민모니터링 주제 사업,’ ‘낮은 성평등 지수 사업,’ 그리고 ‘지자체가 자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나타났다.

셋째, 평가 후 성평등한 환류 가능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시민의 삶에 미칠 영향력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의 속성으로는 ‘인적 대상 사업,’ ‘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제안하는 사업,’ ‘시민모니터링 주제 사업,’ 그리고 ‘낮은 성평등 지수 사업’으로 파악되었다.

IPA 결과 상 모든 선정기준에서 높은 적절성을 보인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 인적 대상 사업
- 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제안하는 사업
- 시민 모니터링 주제로 선정된 사업
- 성평등 지수가 낮은 사업

제 4 장

지역 젠더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회의 결과 분석

제1절 회의 개요

제2절 회의 결과 분석

제3절 정리 및 시사점

제 4 장 지역 젠더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회의 결과 분석

제1절 회의 개요

2014년 대전광역시 및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과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1회의 공식 지역 젠더전문가 및 공무원회의와 여러 차례 비공식적인 회의가 개최되었다.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대전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대전광역시 본청 및 5개 기초자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담당자가 모인 공식 회의는 1차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후 개최되었으며, 회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4-1> 지역 젠더 전문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회의 개요

회의 참석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및 전담연구원 ■ 대전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4인 ■ 대전광역시 및 5개 기초자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담당 공무원
회의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4월 11일
회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개최 목적 및 연구 개요 공유 ■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유 ■ 전문가 조사결과에 따른 연구진의 대상과제 선정 방법 및 제외/선정 기준 제안 ■ 과제선정 기준 및 선정 체크리스트에 대한 자유 토론 ■ 과제 선정 로드맵에 대한 자유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선정 시기 ▷ 과제 선정 단위 ▷ 과제 수 ▷ 과제 선정의 주체 ▷ 중점과제 ▷ 성평등 목표 ▷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회의 결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대전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에 반영 ■ 2014년 대전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 과정에 반영

제2절 회의 결과 분석

성 주류화 제도 추진담당 공무원과 컨설턴트,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가 함께 모인 회의에서 구체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시기와 대상 사업 선정의 방법, 그리고 대상 사업 선정에 있어 필요한 가중치 적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 제외의 경우

〈표 4-2〉 대상과제 제외의 경우 논의 결과

제외의 경우 지표	논의 내용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공무원 휴게실같은 것도 후생복지에 포함되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성 있음
비예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예산 사업이라 할지라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수행방식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
전년도 성 별영향분석평가 반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반영 사업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평가하여 반영하는 과정을 가질 필요 있음.
사업대상 참여수혜 통계가 전혀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사업은 불특정 다수를 포함하여 통계를 가지게 마련임.
사업 위탁기관이 법인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사업인 경우 법인은 복지 쪽이 아주 많기 때문에 다 제외하기 힘들 법인위탁사업인 경우 반발이 심하므로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위탁사업은 위탁을 주기 때문에 과제담당자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위탁을 받은 사업체의 실무담당자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본 개념이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가 힘든 상황임. 위탁사업인 경우, 법인대표가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들을 수 있게 할 예정임 위탁사업인 경우 과업지시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도록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위탁업체에서 평가를 해야 할 의무가 없음. 위탁을 하는 공무원이 자료를 위탁업체에 요청해서 본인이 쓰는 것이 맞음. 위탁업체가 교육에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함. 위탁사업인 경우 앞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성에 대한 명시를 하는 것이 필요함.

2.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의 경우

선정의 경우로 제시된 24개 사업의 속성 혹은 지표에 대해서는 가능한 많은 지표가 체크리스트에 적용되어, 되도록 많은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상사업의 수가 정부합동평가의 지표로 활용되는 한에서는 과제 수 증가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컸다.

<표 4-3> 대상과제 선정의 경우 논의 결과

선정의 경우 지표	논의 내용
기관의 중장기 계획사업으로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 • 계획수립사업 • 중장기 재정계획사업
젠더거버넌스를 통하여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는 항목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성평등지수에서 점수가 낮아 성불평등이 큰 부분의 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가 제안하는 사업 • 지역 여성이 참여한 모니터링 주제 반영 사업 • 대전시에서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언론에서 자주 거론된 사업 • 성불평등 여성 관련 논문이나 자료가 많이 생산되었던 주제부문이나 분야 사업
최근 3년 내 민원 발생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발생사업은 순위가 낮지만 중요한 사업이므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3.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의 절차

〈표 4-4〉 대상과제 선정절차에 대한 논의 결과

안건	주요 내용	세부 내용
과제선정 절차	공무원의 과제 선정 참여 기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외의 경우, 선정의 경우를 고 참고하여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과제선정 방법 필요함 • 작년의 경우 전혀 대상과제 선정과정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었음.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되 배수만큼 주어서 각 부서에서 최종과제를 선택하게 하였을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본인들이 과제 선정과정에 참여하였다는 것으로 과제선정의 불만이 해소될 것.
	과제 선정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중 체크리스트 작성 • 6월 초까지 과제선정 완료 • 6월 중순 ~ 7월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거버넌스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를 기입하는 시기 이전에 국장급 위촉위원이 선임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개최되어 고위공무원의 인식개선을 하는 하나의 교육과정처럼 운영되었으면 하며,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는 것이 국장급에서 먼저 인식하고 국장급이 전파하는 형태로 되었으면 함. • 미리 국장급들과 논의하면 전파가 빠름. 제외의 경우 리스트와 선정의 경우 리스트를 미리 국장급에게 공개한 후 체크리스트 각 부서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변환해도 좋을 듯함.
	체크리스트 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서의 장으로 된 팀을 구성(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또한 활용)하여 간략교육하고 보완하도록 함. • 체크리스트 작성 후 부서장 결재를 득하는 방법 필요함
	선정 가중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의 경우인 경우 가중치 격차를 크지 않게 하여 선정의 경우 순위가 낮은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무조건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과제 수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는 활용하되 BSC 부서 2개, 사업소 1개 과제선정 기준에 따라 각 부서에서 최종 작성 과제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제3절 정리 및 시사점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그리고 컨설턴트가 모인 회의 결과에서 대상과제 선정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지표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과제 제외의 경우 체크리스트 활용 지표

연번	항목
1	집행내역이 물품관련한 예산만 있는사업
2	차년도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
3	여성의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대상과제 선정의 경우 체크리스트 활용 지표

연번	항목
1	인적 대상 사업
2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3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중 성과목표 미달의 사업
4	시설설치개선사업
5	지자체자체추진사업
6	단체장의 공약사업
7	기관의 중장기 계획사업
8	당해연도 신규사업
9	국정과제
10	사업의 주요대상 집단이 성별로 구분되는 사업
11	수혜자 통계가 생산되는 사업
12	예산규모가 1억원 이상 사업
13	주요이벤트 혹은 축제중에서 예산규모가 오천만원 이상 사업
14	매년 지속되는 사업
15	최근3년 내 민원발생한 사업

제 5 장

2014년 대전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과정 사례

제1절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제도 추진의 흐름

제2절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과정

제3절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 및
체크리스트

제4절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결과

제5절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대상 사업 선정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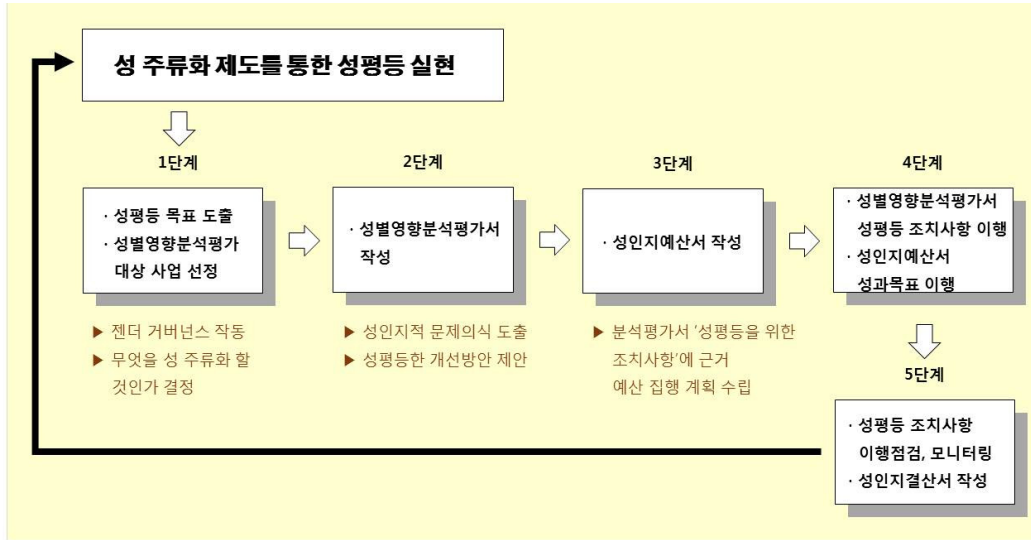
제 5 장 2014년 대전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과정 사례

제1절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제도 추진의 흐름

2014년 대전지역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도 추진 비전과 목적을 설정했다. 다음 그림에 제시된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제도 추진의 흐름은 사업뿐 아니라 조례와 계획을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및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그리고 그 결과를 환류하는 과정 전체를 포괄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등 성 주류화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의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모두 다섯 단계의 상세 추진의 절차를 거친다.

[그림 5-1]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제도 추진의 흐름



첫 단계에서는 성평등 목표를 도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여 대전지역의 정책 중에서 어떤 정책을 성주류화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 젠더 거버넌스가 작동될 수 있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상 과제 선정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서가 작성된다. 평가서의 작성은 성인지적 관점으로 정책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성평등한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연계한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단계이다. 성인지예산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시 도출된 성평등한 조치사항의 실질 집행 방법이다. 조치사항에 따라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성인지예산서 상의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과 ‘성과목표’ 집행이 이루어진다. 실질적 집행행위를 의미한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성인지예산서 상의 ‘성평등을 위

한 조치사항' 과 '성과목표' 가 실제로 집행되었는지 이행점검하는 과정이다. 분석평가서 이행결과서와 성인지결산서 작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시민 모니터링단을 통하여 환류 현황을 시민의 입장에서 점검할 수 있다.

위에 제시된 흐름은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제도 추진의 흐름이면서 성 주류화 전략의 한 모델이기도 하다. 2014년 대전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성 주류화 흐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에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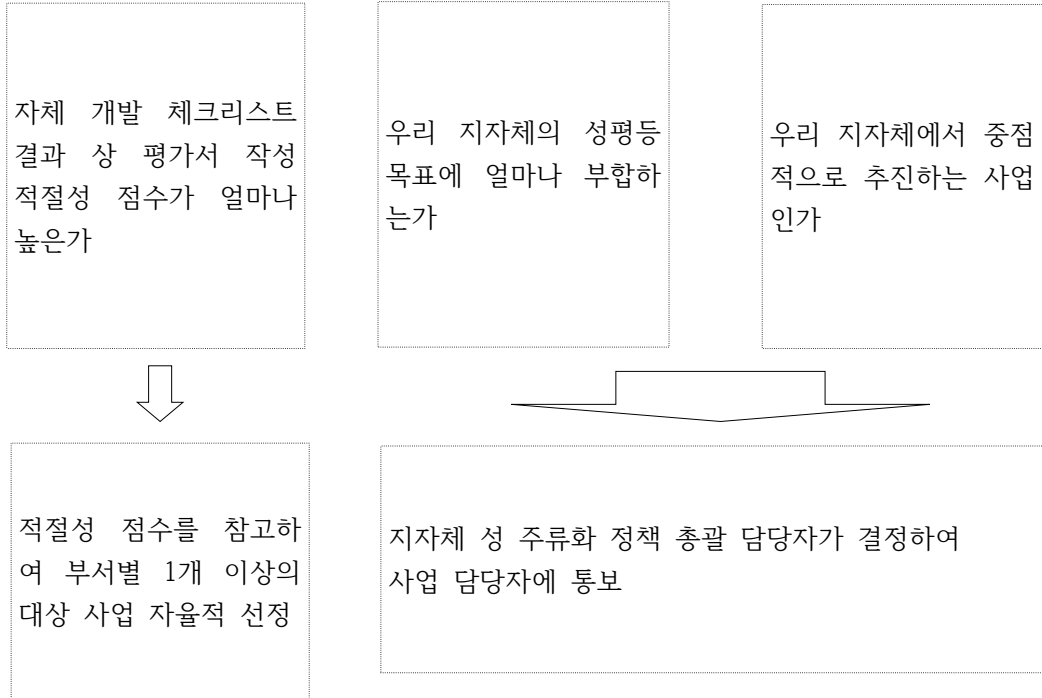
제2절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과정

대전광역시와 5개 기초자치단체는 앞서 제시된 전문가 조사결과와 성 주류화 제도 총괄담당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된 '2014년 대전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 체크리스트' 결과에 따른 선정, '성평등 목표' 에 부합하는 과제 선정, '지자체별 중점 추진 사업' 에 따른 대상 사업이 선정됐다.

2014년 대전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은 아래 세 가지 고려 사항과 크게는 두 번의 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①체크리스트 결과에 나타난 계량화된 대상 사업 선정의 적절성 점수를 고려하여 부서 내에서 대상 사업을 1개 이상 선정하는 과정, ②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담당자가 개별 지자체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 그리고 ③개별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반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총괄담당자가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아래의 그림으로 요약된다.

[그림 5-2] 2014년 대전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고려사항과 절차



2014년 대전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선정 과정에서 젠더 거버넌스는 성평등 목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작동되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대전시 성별영향 분석평가위원회가 2014년 대전광역시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대상 과제를 선정하도록 요청했다.

3차에 걸친 전문가 조사와 (공식, 비공식) 3회에 걸친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담당자와의 회의를 통한 체크리스트 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사업 선정의 적절성 점수를 도출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활용의 절차가 결정되었다. ①시 본청 및 5개 기초 자치구 모든 사업담당자는 배포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담당자를 통하여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제출했고, ②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체크리스트 분석 결과를 도출했으며, ③단위사업별로 대상과제의 적절성이 숫자로 나타난 체크리스트 분석 결과를 통보했다. 그리고 ④부서 내 협의를 통해서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하게 했다.

위 선정의 절차를 그림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3] 2014년 대전지역 체크리스트 활용을 통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의 절차

시기	단계 및 내용	주체	소요기간
4/30	<p>체크리스트 작성 요청 공문 시행</p> <p>공문명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요청 건</p>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시 본청 및 5개 구청	-
5월	<p>체크리스트 취합 및 제출</p> <p>각 부서의 단위 사업 사업담당자가 담당 단위사업에 대해 체크리스트 기입하고 제출</p>	시 본청 및 5개 구청→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4주
6월	<p>체크리스트 분석결과 배포</p> <p>체크리스트를 통해 단위사업 분석하여 기관별 100~300개 단위사업 적절성 점수, 부서별 우선순위 리스트 배포</p>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시 본청 및 5개 구청	2주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개최			
7월	<p>대상과제 최종 확정</p> <p>대전시와 동구는 체크리스트 분석결과를 부서 내 협의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통해,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체크리스트 결과를 부서 내 협의를 통해 대상과제 최종 확정</p>	시 본청 및 5개 구청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6주

제3절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 및 체크리스트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하여 대전지역에서 활용된 2014년 대전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안)은 다음과 같다. 산술 계산이 용이하도록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의 형태로 배포된 체크리스트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5-4] 2014년 대전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안)

단위사업명 :		부서명 :		고려 대상의 경우																		
구분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서명 (인쇄물예 직접서명)	제외 고려의 경우			고려 대상의 경우																
			1. 여성 의 지위 향상도 안 있는 성평등 통실현 가(중 을 직접 목적으 로 하는 사업인 가?)	2. 일반 수종비 사업인 가(중 모를, 현수막 등)	3. 자년 도 사업 계획이 없는 사 업인가 (일몰이 면 o, 그 외 x)	1. 인적 대상사 업인가 (고용, 교육, 특 지, 안 전 등)	1-1. 수 혜자 선 정이 공 모에 의 해 결정 되는가?	1-2. 사 업의 주 요 수혜 자가 통 계 가능 한 사업 인가?	2. 시설 설치 개 선사업 인가? (공편, 건축, 환 경 개 선, 도 로 등 o, 단순 개보수 사업일 경우 자)	3. 전액 지방비 사업인 가?	4. 국비 지원·기 금 사업 인가?	5. 매년 지속되 는 사업 인가?	6. 당해 연도 신 규사업 인가?	7. 기관 의 중장 기 계획 사업인 가?	8. 단체 장의 공 약사업 인가?	9. 세부 사업 기 준으로 예산규 모가 1 억원이 상인가?	10. 주 요 행사 혹은 축 제 중에 서 예산 규모가 오천만 원 이상 사업인 가?	11. 2013 년도 성 지예산 성과적 성하였 는가?	11-1. 성 인지 예산 결 산결과 성과목 표를 달 성하였 는가?	12. 최 근 3년 내 민원 이 발생 한 사업 인가?		
세부사업명 1	홍길동 042-530-3536		o	*	*	o	*	*	o	*	*	*	o	*	o	o	*	*	*	*	*	*
세부사업명 2																						
세부사업명 3																						
세부사업명 4																						
세부사업명 5																						
세부사업명 6																						
세부사업명 7																						
세부사업명 8																						

2014년 대전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체크리스트의 특징

1. 제외고려의 경우, 고려 대상의 경우로 나뉜다.
2. o,x로 기입한다.
3. 최상단에 단위사업명과 부서명을 기입하도록 하여 어떤 부서에서 어떤 단위사업을 기입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4. 단위사업 중 세부사업별로 각각 세부사업의 특성에 맞게 항목에 체크하도록 한다.
5. 단위사업 중 세부사업의 각 담당자가 동일한 인물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담당자의 이름을 기입해야 하며, 문의가 가능하도록 전화번호도 기입할 수 있도록 한다.
6. 반드시 사업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업담당자가 기입하고 서명을 해야 한다.(서명은 인쇄된 파일에 한다.)
7. 체크리스트에 기입된 'o' 표시가 된 항목은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가 산정한 가중치를 부여한다(사업담당자가 체크할 당시에는 가중치를 알지 못한다).

전문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담당자들과의 회의에서 도출된 항목별 가중치 제안 내용에 근거하여 체크리스트의 각 항목별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설정 했다. 항목별 가중치의 결과의 범위는 최소 -40점, 최대 120점이다. 각 가중치의 부여는 기본 10점을 기준으로 하되 전문가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총괄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0~20점 내외의 가중치 차이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각 항목의 가중치의 차이가 크지 않는 것은 특정 항목에 해당하는 과제만 제외가 집중되거나, 선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다양한 특성의 사업이 대상과제로 선정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중치를 적용하면 사업별로 얼마나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기에 적절한지 그 적절성이 계량화되어 산출된다. 제외의 경우 '음수(-)' 가중치가 적용되었는데,

이 항목에 해당되면 선정 적절성이 떨어져 선정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아진다. 반대로 선정 항목에서는 ‘양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그림 5-5] 2014년 대전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가중치 부여(안)

선정 내용		가중치
제외 의 경우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가?	0
	2. 일반수용비만 있는 사업인가?(홍보물, 현수막 등)	-20
	3. 차년도 사업 계획이 없는 사업인가? (일몰이면 0, 아니면 x)	-20
고려 대상 의 경우	1. 인적대상사업인가?(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20
	1-1. 수혜자 선정이 공모에 의해 결정되는가?	10
	1-2. 사업의 주요 수혜자 통계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인가?	15
	2. 시설설치 개선사업인가? (공원, 건축, 주거 환경 개선, 도로 등 0, 단순 개보수 사업일 경우 x)	20
	3. 전액 지방비 사업인가?	10
	4. 국비지원·기금 사업인가?	10
	5. 매년 지속되는 사업인가?	10
	6. 당해연도 신규사업인가?	10
	7. 기관의 중장기 계획사업인가?	10
	8. 단체장의 공약사업인가?	5
	9. 세부사업 기준으로 예산규모가 1억원이상인가?	10
	10. 주요 행사 혹은 축제 중에서 예산규모가 오천만원 이상 사업인가?	10
	11.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였는가?	0
11-1. 성인지예산 결산결과,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가(달성하지 못했다면 0, 달성했다면 x)?	10	
12. 최근 3년 내 민원이 발생한 사업인가?	10	
합계		120

제4절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결과

체크리스트 결과 취합에는 약 4주가량이 소요되었다. 체크리스트 결과는 가중치 적용을 통해 분석되었는데, 부서 내 단위사업별로 적절성 점수에 따라 순위를 매긴 결과와 단위사업만을 고려하여 총괄적으로 적절성 점수를 매긴 결과를 동시에 송부 하였다. 이를 근거로 부서 내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 대상 사업을 1개 이상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래 그림은 단위사업별 총괄 순위와, 부서 내 단위사업별 적절성 점수 순위 결과 분석표의 일부이다.

[그림 5-6] 시청 282개 단위사업별 순위 리스트

연번	실국명	부서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담당자이름(전화번호)	점수	순위
1	보건복지여성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건전 육성보	1) 청소년 공부방 운영	1)	130	1
2	경제산업국	농업유통과	농업경쟁력강화	1) 도시농업육성	1)	100	2
3	문화체육국	문화체육시설과	체육시설 확충 및 근	1) 안영생활체육 시설단지 조성	1)	90	3
4	기획관리실	교육협력담당관실	교육환경개선 및 재	1)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1)	85	4
5	경제산업국	일자리추진기획단	일자리창출	1) 공공근로사업 관리 2) 공공근로사업비 지원 3)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 2) 3)	85	4
6	과학문화산업	과학특구과	과학기술진흥	1) 주니어닥터운영	1)	85	4
생 략							
277	과학문화산업	문화산업과	엑스포재창조사업	1) 엑스포재창조 사업지원	1)	-20	277
278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 운영	1) 민생사법경찰활동	1)	-20	277
279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비상대책관리	1) 울지연습 2) 화랑훈련 3) 충무훈련	1) 2) 3)	-20	277
280	환경복지국	생태하천과	수질보전관리	1) 먹논물 안전관리	1)	-20	277
281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건설행정	1) 건설행정관리	1)	-20	277
282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도시균형개발	1) 도시균형개발사업 2) 경부고속철도변정비	1) 2)	-20	277

[그림 5-7] 시청 282개 부서별 순위 리스트

실국명	부서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담당자이름(전화번호)	점수	부서 순위
경제정책과						
경제산업	경제정책과	시장시설현대화	1) 전통시장활성화사업	1)	60	1
경제산업	경제정책과	에너지절약 및	1) 유사석유 단속및 가스안전관리	1)	55	2
경제산업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창업및	1) 창업및경영개선지원	1)	55	2
경제산업	경제정책과	사회단체보조금	1) 사회단체보조금	1)	50	4
경제산업	경제정책과	신재생에너지	1) 신재생에너지 보급	1)	50	4
경제산업	경제정책과	지역경기활성화	1) 대전경제과학대상 시상	1)	45	6
경제산업	경제정책과	전통시장및 상경	1) 유통 및 시장분정조정	1)	40	7
경제산업	경제정책과	디자인산업육성	1) 산업디자인육성	1)	40	7
경제산업	경제정책과	물가안정및 소비	1) 지역물가 안정화 추진 2) 소비자시책추진 기능강화	2)	20	9
생 략						
환경정책과						
환경복지	환경정책과	환경도시 기반	1)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	1)	50	1
환경복지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1)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1)	50	1
환경복지	환경정책과	산업단지 환경	1) 산업단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1)	50	1
환경복지	환경정책과	대기환경 기반	1) 대기측정장비교체 2)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및 연료비보조 3) 수도권외지역대기개선대책	1) 2) 3)	30	4
환경복지	환경정책과	생활환경 기반	1)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1)	20	5
환경복지	환경정책과	자연환경보전	1) 환경체육교육프로그램 2)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1) 2)	20	5

※ 담당자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함.

※ 주황색은 단위사업 중 최고점수의 세부사업이 1개일 경우, 파란색은 단위사업 중 최고점수의 세부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를 뜻함.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담당자는 체크리스트 분석결과를 부서별로 배포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상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세부사업이 여러 개인 경우 이들 중 어떠한 세부사업을 최종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우선 각 세부사업의 점수를 비교하여 최고 적절성 점수가 나온 세부사업을 대상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만약 점수가 동점인 세부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과제담당자가 동일한 세부사업들이면 과제담당자 1인이 스스로 어떤 사업을 평가할지 결정하고, 스스로 결정이 어려울 시 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관, 기관 담당컨설턴트와의 협의하여 어떤 세부사업을 평가할지 확정하였다. 각 세부사업의 담당자가 다르면 세부사업 담당자끼리 논의하여 결정하고, 결정이 어려울 경우 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관 또는 기관 담당 컨설턴트와의 협의를 통하여 세부사업을 확정하였다.

6개 기관별 최종적으로 평가서 작성 세부사업을 결정하는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 기관별 단위사업 중 작성 세부사업 선정 방법

기관	대상과제 선정방법	
	단위사업 선정	세부사업 선정
시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분석결과 활용 (282개 부서별 순위리스트 활용) 2.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통해 성평등 목표 수립, 대상과제 리스트 확정, 3. 부서별 2배수(4위까지) 사업 통보하여 각 부서에서 2개 단위사업 최종 확정하도록 안내 4. 부서에서 협의하여 제출한 대상과제 부서내 선정결과 바탕으로 대상과제 최종확정(11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의 점수비교를 통하여 최고 점수가 나온 세부사업을 대상과제로 선정 - 점수가 높은 세부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동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분석결과 활용 (150개 단위사업별 순위리스트 활용) 2.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통해 성평등 목표 수립, 대상과제 최종확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세부사업의 담당자가 동일할 경우 스스로 결정 또는
중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분석결과 활용 (121개 단위사업별 순위리스트 활용) 2. 부서별 협의 통하여 107개 사업 대상과제 최종확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관 또는 기관담당컨설턴트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
서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분석결과 활용 (180개 단위사업별 순위리스트 활용) 2. 부서별 협의 통하여 100개 사업 대상과제 최종확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각 세부사업의 담당자가 다를 경우 세부사업 담당자 간 결정 또는
유성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분석결과 활용 (127개 단위사업별 순위리스트 활용) 2. 부서별 협의 통하여 100개 사업 대상과제 최종확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관 또는 기관담당컨설턴트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
대덕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분석결과 점검 (117단위사업별 순위리스트 활용) 2. 부서별 협의 없이 모든 단위사업 117개 대상과제 리스트 통보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분석결과를 단위사업별 순위리스트, 부서별 순위리스트 2가지 형식으로 송부하였는데 시청은 부서별 순위리스트만 활용하고 각 자치구는 단위사업별 순위리스트만 활용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시청은 BSC로 인해 부서별 2개 이상 사업을 선정해야 하였기 때문에 단위사업별 순위 리스트보다는 부서별 순위 리스트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구는 BSC가 적용되지 않고 이미 전년도 70%에 해당하는 단위사업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였기 때문에 올해는 70%이상을 하려면 부서별을 고려하기 보다는 단위사업별 순위리스트 전체에서 몇 가지 사업만 제외하는 것이 대상과제 선정에 수월하였기 때문에 단위사업별 리스트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대상과제를 단위사업의 70%이상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기관은 단위사업 대상과제 순위 리스트만, 대상과제 목표 수가 적고 부서별로 대상과제를 선정하고자하는 기관은 부서별 대상과제 순위 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대덕구의 경우 분석한 모든 단위사업을 대상과제리스트로 확정했다. 대덕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가능한 단위사업이 적었기 때문에 일단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가능한 단위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체크리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부서 내에서 자율적으로 최종 대상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결과와는 무관한 선정 결과를 제시한 부서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체크리스트 분석 결과에 따라 적절성 점수를 최대 반영하여 대상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과제 체크리스트 활용은 시청에서는 부서별로 적절한 분석평가 대상 단위사업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자치구에서는 단위사업에서 적절한 세부사업을 찾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보다 더 많은 수의 평가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일부 지자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 비하여 많은 수의 대상 사업이 선정되었다. 2014년 대전광역시 및 5개 기초자치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2〉 기관별 대상과제 선정 현황

기관	체크리스트 분석결과 송부	2014년 최종과제 선정 결과	2013년 최종 대상과제
시청	282개	116개 (성평등 목표 수립)	113개
동구	150개	112개 (성평등 목표 수립)	78개
중구	121개	107개	81개
서구	180개	100개	85개
유성구	127개	100개	70개
대덕구	117개	117개	72개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많은 수의 대상 사업들이 선정되었다. 체크리스트 작성 결과와 같은 수의 대상 사업이 선정된 자치구도 있지만, 부서별 논의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제안,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거쳐 체크리스트 대상 사업 중 일부가 최종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제5절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대상 사업 선정의 과제

본 연구는 3차에 걸친 전문가 조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담당자 및 지역 젠더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대전지역만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 그리고 실제 개발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2014년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 사업들을 선정하고 추진한 과정을 소개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제도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대상 사업 선정 과정에 젠더 거버넌스가 구성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1·2차에 걸친 전문가 조사에서 전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들은 사업 선정의 절차에 거버넌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하고, 또 분명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2014년 대전광역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성평등 목표를 도출하고 이에 부합하는 분석평가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동구를 제외한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은 이러한 노력의 과정이 생략된 상황이다. 조례를 통하여 대상 사업에 있어 젠더 거버넌스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역별 성평등 지수의 활용이 요구된다. 1·2차에 걸친 전문가 조사에서 전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들은 성평등 지표 상 점수가 낮아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은 사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평가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주었다. 계량화된 지표인 ‘성평등 지수’는 현재 그 객관성과 구체성, 적절성 관련한 논란이 많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의 연계 가능성이 가장 용이하고 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지수 측정 방법을 개선해 발표하고, 앞으로 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의 기준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별 성평등 목표의 도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평등 목표는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뿐 아니라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성평

등 목표를 도출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한 뒤 성인지 예산서를 통하여 구체적 실현을 모색하는 것이 성 주류화 전략의 주요 흐름이라고 볼 때, 성평등 목표의 도출은 어느 지자체이건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성평등 목표의 도출 과정에 센터 거버넌스가 구성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민이 제안하는 분석평가 대상 사업 반영이 차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2012년부터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를 중심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고 있다. 모니터링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환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또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2013년에 대전광역시는 세계한민족 여성대회(KOWIN)를 개최할 기회가 있어, 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여성들이 직접 분석평가 대상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모니터링이나 시민이 참여하는 타운미팅을 활용하여 분석평가 대상 사업을 폭넓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문영(2013),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현안과제 발굴』,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 김경희 외(2011),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 선정 기준과 절차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 노승용(2006), “델파이 기법: 전문적 통찰로 미래예측하기”, 『국토』, 제299호, 53-62쪽.
- 박해천·이경훈·박준호·정문조·강인원(2011), “IPA분석기법을 통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지원 서비스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광주지역 건설현장 근로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제13권 제4호, 1-7쪽.
- 여성가족부(2013), 『2013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 연구』.
- 여성가족부(2014), 『2014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 이중성(2001), 『연구방법 21: 델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주호진·조주연(2012),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사업의 효과성 분석: 서브퀄(SERVQUAL)과 중요도-성취도 분석(IPA)기법의 적용”,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3권 제1호, 143-166쪽.
- 한정원(2010), “성주류화 제도 논의와 발전방향 연구”, 『여성학연구』, 제20권 제1호, 161-192쪽.
- 홍미영·류춘호(2013),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성 강화”, 『지방정부연구』, 제17권 제1호, 83-103쪽.
- Martilla, John A. and John C. James(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77-79.

부 록

부록 1. 사전 전문가 설문조사지

부록 2. 1차 중앙 및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설문조사지

부록 3. 2차 중앙 및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대상과제 선정 전문가
설문조사지

부록 1. 사전 전문가 설문조사지

전문가 조사지_1차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지표 개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2014년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대상과제 선정 기준과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전국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선정 기준 및 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전 단계로,
소수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미리 듣고, 과제 선정 기준 및 지표 개발 설문조사지를 개발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견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및 회송 방법	▶ 문의처 :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정양화(042-530-3538) ▶ 회송방법 : E-mail(yanghwa7@gmail.com), Fax(042-530-3559)
------------------	--

I. 선정 방법

1.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선정은 일반적으로 “제외의 경우”와 “선정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매년 “제외”와 “선정”으로 나누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이유를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답변>

※ 다음의 문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제외와 선정의 기준 및 지표에 관한 것입니다. 제외와 선정으로 나누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시더라도,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II. 제외의 경우 (기준, 지표)

※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고려하고 있는 제외의 경우 예)

1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2	전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3	위탁사업 전체
4	위탁사업인 경우, 수행기관이 법인인 사업
5	차년도 사업 계획이 없는 사업
6	비예산 사업
7	예산규모가 100만원 미만 사업
8	3년 내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미 시행된 사업

2-1. 위 제외의 경우 외에 귀하께서 고려하시는 제외의 경우 예)를 직접 기입하여 주십시오. 위에 제시된 제외의 기준을 수정하는 의견도 기입하여 주십시오.

9	
10	
11	
12	
13	
14	
15	
16	
수정의견	
수정의견	
수정의견	
수정의견	

2-2. 대상과제에서 제외하기 위한 조건이나 주요 변수, 상황 등 다양한 부분에서 고려해야 할 것 들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답변>

Ⅲ. 선정의 경우 (기준, 지표)

※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고려하고 있는 선정의 경우 예)

1	인적대상사업(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2	시설설치 개선사업(공원, 도로, 주거 등)
3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4	여성대상 사업이 아니면서 여성의 기본권(건강, 안전 등)과 연관된 사업
5	지자체 주요 시책 사업
6	단체장의 공약 사업
7	지자체 자체추진 사업
8	중장기 재정계획 사업
9	매년 지속되는 사업
10	당해 연도 신규사업
11	당해 연도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주요 이벤트 혹은 축제 사업
12	최근 3년 내 민원이 발생한 사업
13	예산규모가 10억원 이상 사업

3-1. 위 선정의 경우 외에 귀하께서 고려하시는 선정의 경우 예)를 직접 기입하여 주십시오. 위에 제시된 선정의 기준을 수정하는 의견도 기입하여 주십시오.

14	
15	
16	
17	
18	
19	
20	
21	
수정의견	
수정의견	
수정의견	

3-2. 대상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조건이나 주요 변수, 상황 등 다양한 부분에서 고려해야 할 것 들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부록 2. 1차 중앙 및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설문조사지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대상과제 선정 전문가 조사지_2차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지표 개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2014년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대상과제 선정 기준과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전국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선정 기준 및 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으로, 2014년 대전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선정 기준 및 지표를 개발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견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및 회송
방법

▶ 문의처 :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정양화(042-530-3538)
▶ 회송방법 : E-mail(yanghwa7@gmail.com), Fax(042-530-3559)

I. 제외의 경우 (기준, 지표)

1-1. 귀하께서는 다음에 제시된 사업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외 필요 정도를 번호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번호가 높을수록 제외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 번	구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전혀 제외할 필요 없음 ← → 반드시 제외해야 함 </div>										변 호 기 입 란
		1	2	3	4	5	6	7	8	9	10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여성농어업인육성,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등)	1	2	3	4	5	6	7	8	9	10	
2	전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1	2	3	4	5	6	7	8	9	10	
3	위탁사업인 경우, 수행기관이 법인	1	2	3	4	5	6	7	8	9	10	
4	차년도 사업 계획이 없는 사업	1	2	3	4	5	6	7	8	9	10	
5	비예산 사업	1	2	3	4	5	6	7	8	9	10	
6	예산규모가 100만원 미만 사업	1	2	3	4	5	6	7	8	9	10	
7	사업 대상자/참여자/수혜자 통계가 전혀 없는 사업	1	2	3	4	5	6	7	8	9	10	
8	1회성 행사로 공무원의 재량이 거의 없는 사업	1	2	3	4	5	6	7	8	9	10	
9	토목사업(하천공사, 하수관신설, 지하수보전, 사방사업 등)	1	2	3	4	5	6	7	8	9	10	
10	공무원 내부/청사/후생복지 관련한 사업 (복지카드, 법제 및 소송업무, 기계장비유지관리 등)	1	2	3	4	5	6	7	8	9	10	
11	집행내역이 물품 관련한 예산만 있는 사업	1	2	3	4	5	6	7	8	9	10	

1-2. **대상과제 선정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제외하기 위한 조건이나 주요 변수, 상황** 등 다양한 부분에서 고려해야 할 것 들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답변>

연 번	구분	←—————→										번호 기입란
		전혀 선정할 필요 없음					반드시 선정해야 함					
14	지역 성평등 지수에서 점수가 낮아 성 불평등이 큰 부분 또는 지역 성평등 지표를 개선시킬수 있는 사업	1	2	3	4	5	6	7	8	9	10	
15	기관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	1	2	3	4	5	6	7	8	9	10	
16	사업의 주요 대상 집단이 성별로 구분되는 사업	1	2	3	4	5	6	7	8	9	10	
17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또는 여성정책관련위원회)가 제안하는 사업	1	2	3	4	5	6	7	8	9	10	
18	국정과제	1	2	3	4	5	6	7	8	9	10	
19	수혜자 통계가 생산되는 사업	1	2	3	4	5	6	7	8	9	10	
20	계획수립 사업(도시발전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1	2	3	4	5	6	7	8	9	10	
21	2012년, 2013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사업 중 성과목표 미달의 사업	1	2	3	4	5	6	7	8	9	10	
22	2012년,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보고서가 작성되지 않고, 성인지 예산서만 작성된 사업	1	2	3	4	5	6	7	8	9	10	
23	2012년,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지역회의, 우선순위 사업선정 등)에서 예산위원이 상정하는 사업	1	2	3	4	5	6	7	8	9	10	
24	2012년, 2013년 지역여성이 참여한 모니터링 주제 반영 사업	1	2	3	4	5	6	7	8	9	10	

2-2. **대상과제 선정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조건이나 주요 변수, 상황** 등 다양한 부분에서 고려해야 할 것 들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부록 3. 2차 중앙 및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대상과제 선정 전문가 설문조사지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대상과제 선정 전문가 조사지_3차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지표 개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2014년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대상과제 선정 기준과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설문조사에서 선생님께서는 특정 성격의 사업들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얼마나 필요한지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과제 선정 기준의 명확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이번 조사에서는 특정 성격의 사업들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시민의 삶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과 성평등한 **환류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매우 바쁜 시기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국적으로 수렴해보는 소중한 기회라 생각하시고, 고견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의 및 회송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 의 처 :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정양화(042-530-3538) ▶ 회송방법 : E-mail(yanghwa7@gmail.com), Fax(042-530-3559)
------------------	--

귀하께서는 다음에 제시된 사업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로 선정되면 얼마나 시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성평등한 환류/개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해당 번호를 지우고 V 표를 넣어주십시오. **번호가 클수록 파급력이 크고, 환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 항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시민의 삶에 미칠 영향력/파급력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예상 가능한 성평등한 환류/개선가능성									
	파급력 약함					파급력 강함					환류 가능성 낮음					환류 가능성 높음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인적대상사업(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2)시설설치 개선사업(공원, 도로, 주거 등)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3)지자체 자체추진 사업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4)최근 3년 내 민원 발생한 사업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5)예산규모가 1억원 이상 사업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6)지역 성평등 지수에서 점수가 낮아 성불평등이 큰 부문 또는 지역 성평등 지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7)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또는 여성정책관협의회)가 제안하는 사업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8)2012년, 2013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사업 중 성과목표 미달의 사업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9)2012년,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지 역회의 우선순위사업선정 등)에서 예산위원이 상정하는 사업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0)2012년, 2013년 지역여성이 참여한 모니터링 주제 반영 사업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감사합니다.

정책연구보고서 2014-14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방안

발행일 2014년 7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1-826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85(선화동) 구충남도의회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유선디자인 TEL 042-632-3007 FAX 042-632-8003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ISBN : 978-89-98154-98-1 93330